

폐수배출시설 자가진단체크리스트

I. 물환경보전법

점검사항 및 주요 확인사항		법 조항	처분내용(1차 기준)
【폐수배출시설 인허가】			
1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▶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1일 최대 0.01m ³ 배출 ▶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는 폐수를 1일 최대 0.1m ³ 배출	▶ 폐수배출시설 • 법 제2조제10호 • 시행규칙 제6조 및 [별표 4]		
2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▶ 대상 :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적용기준 이상 배출되는 시설 등	▶ 허가 • 법 제33조제1항, 시행령 제31조제1항 ▶ 특정수질유해 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• 시행규칙 35조의2 및 [별표13의2]	<설치 허가 미이행> ▶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▶ 폐수배출시설 설치 가능지역 : 사용중지 ▶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: 폐쇄명령	
3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▶ 대상 : 허가 대상 외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	▶ 설치 신고 • 법 제33조제1항, 시행령 제31조제2항	<설치 신고 미이행> ▶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▶ 폐수배출시설 설치 가능지역 : 사용중지 ▶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: 폐쇄명령	
4 폐수배출시설 변경 허가 또는 변경 신고 ▶ 변경 전 허가·신고 • 폐수배출량이 50% 증가, 사업장 종류 변경,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 배출 등 ▶ 변경 후 신고 • 대표자·사업장명·소재지·폐수위탁자·전부폐쇄 등 • 원료나 첨가물 등의 변경 없이 측정 또는 검사결과 새로운 수질오염 물질이 배출되는 경우(변경허가 사항 외)	▶ 변경 허가 • 법 제33조제2항, 시행령 제31조제3항 ▶ 변경 신고 • 법 제33조제3항, 시행규칙 제38조	<변경 허가 미이행> ▶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▶ 폐수배출시설 설치 가능지역 : 사용중지 ▶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: 폐쇄명령 <변경 신고 미이행> ▶ 경고, 과태료(60만원)	
5 폐수배출시설 가동시작 신고 ▶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·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가동시작 신고	▶ 법 제37조제1항, 시행령 제34조, 시행규칙 제46조	>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▶ 조업정지	
【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】			
6 배출허용기준 준수 ▶ 방류수 수질 확인(산업단지별 별도 배출허용기준 확인)	▶ 법 제32조, 시행규칙 제34조 및 [별표13] ▶ 법 제41조제1항제2호, 시행령 제45조, 제46조	> 개선명령 ▶ 초과배출부과금 부과(19항목)	
7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: 금지행위 ▶ 무단방류, 비밀 배출구(구조) 설치, 물을 섞어 처리 또는 배출,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비정상 가동 등	▶ 법 제38조제1항	>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▶ 조업정지(10일)	
8 측정기기 부착·운영 ▶ 적산전력계, 적산유량계 설치 및 정상 가동 ▶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 사업장 확인 ▶ 금지행위 • 측정기기 조작, 측정 결과누락 및 거짓 작성 등	▶ 법 제38조의2제1항 시행령 제35조 및 [별표7], [별표8] ▶ 법 제38조의3제1항 ▶ 법 제38조의3제2항	<측정기기 미부착> ▶ 100만원 이하 벌금, 경고 <금지행위 위반> ▶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▶ 과태료(500만원) ▶ 경고 또는 조업정지(5일)	
9 방지시설의 설치 면제자 준수사항 : 위탁폐수 등 ▶ 5일분이상 저장시설과 계측기 등 부착 ▶ 폐수수탁처리 계약서 등	▶ 법 제35조제1항, 시행령 제33조, 시행규칙 제41조, 제44조(별표 14)	> 과태료(200만원) ▶ 경고	
10 운영일지 작성 ▶ 운영일지 매일 기록, 보관 ▶ 가동시간, 전력량, 용수량, 폐수발생량, 폐수배출량 등 기입	▶ 법 제38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49조 ※ (서식) 시행규칙 [별지 제18호, 제19호, 제20호]서식	> 과태료(100만원) ▶ 경고	
【환경기술인 및 환경책임보험 등】			
11 환경기술인 임명 및 교육이수 ▶ 최초 임명 : 가동시작 신고시 ▶ 변경 임명 :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▶ 최초 교육 : 최초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1년 이내 ▶ 보수 교육 : 최초 교육 후 3년마다 이수	▶ 환경기술인 임명 • 법 제47조, 시행령 제59조 및 [별표17] ▶ 환경기술인 교육 • 법 제67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93조	<환경기술인 미임명> ▶ 과태료(200만원) ▶ 미임명(선임명령), 자격미달(경고) <교육 미이수> ▶ 과태료(60만원), 경고	
12 환경책임 보험가입 ▶ 대상 :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장(1종~5종, 위탁처리 포함)과 특정수질유해물질 미배출 1종사업장	▶ 「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」 제17조, 시행령 제7조 및 [별표3]	>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▶ 경고	
13 수탁처리폐수 물바로시스템 입력 ▶ 인계내역 : 폐수 위탁 전(인계일로부터 4일 이내) ▶ 인수내역 : 폐수 인수일로부터 3일 이내	▶ 법 제66조의2제2항, 시행령 제79조의3, 시행규칙 [별표 21의2]	> 과태료(50만원)	

참 고

- 위 체크리스트 내용은 2023.10월 법령 기준으로 제작
- 최신 법령 조회 : 국가법령정보센터 접속(<http://www.law.go.kr>)에서 "물환경보전법" 검색
☞ 최신 법령을 조회하여 각 규정의 세부내용 확인 및 이행 필요
※ 배출사업장에서 2년 이내 동일한 위반 행위로 적발 시 기증처분 받게 되며, 처분 내용은 위반 행위에 따라 다를 수 있음.



폐수배출시설 자가진단체크리스트

II. 체크리스트

점검사항	점검결과 예 아니오	점검사항	점검결과 예 아니오
1. 배출시설 설치허가(신고) 사항			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배출시설 허가증(신고증명서)의 내용과 실제 설치 사항이 다른 것이 없는가(변경허가, 변경신고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배출시설 허가증(신고증명서)의 내용과 실제 시설 설치 사항이 다른 것이 없는가(변경허가(신고)) • 폐수배출량이 50%이상(특정수질유해 물질이 포함된 폐수는 30%이상) 또는 700m³/일 이상 증가 • 사업장의 종류(종별)가 변경된 경우 • 새로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• 폐수처리방법 및 처리공정을 변경한 경우 •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• 기타 사항 변경 (폐수배출 공정, 사업장 명칭 및 소재지, 대표자, 폐수위탁업체 및 기타 기재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) 			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가동시작 신고 후 조업을 하고 있는가			
2. 환경기술인 근무상태 확인			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환경기술인의 종별 자격기준 적정 여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환경기술인 임명 여부 및 자격기준 적정 여부 			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환경기술인 상시근무 여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자격증 대여 불가 			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환경기술인 교육 이수 확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최초교육 : 최초 임명일로부터 1년 이내 • 보수교육 : 최초 교육 후 3년마다 			
3. 방지시설 면제자 준수사항			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전량위탁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폐수 저장시설 설치 • 폐수 5일분 이상 성상별로 보관 • 폐수량 계측기(눈금 등) 부착 여부 ※ 배출시설에서 직접 위탁할 경우, 별도 저장시설 필요 없음 • 폐수수탁처리업자와 폐수수탁처리계약서 작성 • 물바로시스템을 통해 폐수 위·수탁확인서 입력 • 경남도에 폐수위탁실적 보고 ※ 매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			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전량 재이용하는 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장 외부로 폐수 배출 여부 			
4.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관련			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확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현장 확인 • 방지시설 고장방치(기기고장 등) 여부 • 전력 사용량 및 기타 관계 장부 등 비교 검토 			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처리약품의 정상 투입 여부 확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현장 확인 • 표준계산서에 의한 약품 구입량, 재고량, 톤당 투여량 및 소모량 비교 검토(허위 기록 여부) 			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비밀 배출구 설치 여부 확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현장 확인(폐수가 새어나가는 곳이 있는지 확인) • 용수사용량과 폐수배출량 비교 •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계도면 검토 			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최종방류수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처리상태 육안 확인 • 시료채취 및 수질 분석 • 기준 초과 시 과부하 여부, 처리공법 적정성 여부 등 검토 			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측정기기 정상 가동 여부 및 운영일지 작성 확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TMS, 적산전력계유량계 고장방치 여부 등 운영 • 운영일지 기록·보존 여부 확인 • 운영일지 매일 작성 및 결재권자 결재 여부 • 운영일지 법정 서식에 맞게 기록 및 보존 여부 			
< 지도·점검 시 사업장 준비 서류 >			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			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			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환경기술인 임명서 및 교육 이수증			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폐수 위·수탁 계약서 및 인계서			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환경책임보험 가입증명서			

□

체크합시다!
조치 필요사항

□

□

□

□

